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33
----------	------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극장과 체육관 대관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 시설 대관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대관업무를 표준화함으로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번 중심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표기방법으로 조정 (안 제2조)

☞ “성포동 214-1번지” ⇒ “삼일로 696(성포동)”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안 제3조)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육성, 청소년수련관

다. 수련관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제6조(운영경비)”에서 삭제 후, 신설되는 “제13조 (사용료 등)”에 규정 (안 제13조)

라. 수련관 시설의 대관업무 표준화를 위해 사용신청 및 허가규정을 명문화 (안 제11조)

마. 공공질서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명시 (안 제12조)

바. 개별 법률에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보장을 위해 사용료 등 면제근거 마련 (안 제13조)

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용료 등 반환규정 마련 (안 제14조)

아.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7조)

자.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소극장과 체육관의 부대시설(피아노, 마이크, 냉난방 등)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 [별표]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
-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9. 9. ~ 9. 29.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성포동 214-1번지”를 “삼일로 696(성포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범위)** 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조 규정에 의거”를 “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제5조 및 제6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 본문 중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부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대상)**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제13조(사용료 등)**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거나, 강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② 프로그램 강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분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수련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파견)**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김 성 남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안 성 영
	담당자 성명·전화	이 재 호 (행정 2218)

## [별표]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分	기 준	사 용 료		
		아동 · 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자유이용	1인/1월	10,000	30,000
		1인/1시간	무 료	2,000
다목적실	자유이용	2시간	무 료	10,000
강의실	자유이용	2시간	무 료	10,000
댄스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 료	10,000
음악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 료	10,000
체육관 · 소극장 · 체육관	체육관 자유이용	1인/2시간	무 료	2,000
	대 관	평 일	2시간	20,000
		토 · 공휴일	2시간	20,000
	부 대 시 설	그랜드피아노	1회	10,000
		무선마이크	2개	6,000
		유선마이크	2개	무 료
		빔프로젝트	1대	무 료
		냉난방	시간당	20,000
안산대덕 청소년과학관	천체영상관람	1인/1회	1,000	2,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산출기초 : 사용량(<math>m^3</math>)×단가(원)</li> <li>◦ 추가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li> <li>· 소극장 · 체육관</li> </ul> </li> <li>◦ 대관 : 평일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토 · 공휴일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li> <li>◦ 부대시설 : 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 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li> <li>※ 시설 대관의 경우 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를 적용함.</li> </ul>			

## 신·구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214-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 <u>삼일로 696(성포동)</u> .....
〈신 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 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 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 이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적용범위) 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사업)</u>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u>제6조(사업)</u>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u>제4조(설치운영)</u> ①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u>제7조 (설치운영)</u> ① ..... ..... 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u>제5조(기본재산)</u> 제4조제1항에 의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u>제8조(기본재산)</u> 제7조 ..... ..... ..... 1. ~ 2. (현행과 같음)
<u>제6조(운영경비)</u> ① (생략) ② 수련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생략)	<u>제9조(운영경비)</u>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0조(이용대상)</u>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신 설〉</u>	<u>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u> ①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li> <li>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li> <li>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li> <li>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li> <li>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li>6. 천재지변 등</li> </ol>
<u>〈신 설〉</u>	<p><u>제13조(사용료 등)</u>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2.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li> </ol>
<u>〈신 설〉</u>	<p><u>제14조(사용료 반환)</u>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거나, 강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p> <p>② 프로그램 강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분 수강료를 반환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5조(손해배상) 수련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p>
<u>제7조(단위사업의 위탁) (생략)</u>	<p><u>제16조(단위사업의 위탁) (현행과 같음)</u></p>
<u>〈신 설〉</u>	<p><u>제17조(파견)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u></p>
<u>제8조(공유재산 사용) (생략)</u>	<p><u>제18조(공유재산 사용) (현행과 같음)</u></p>
<u>제9조(감독 등) (생략)</u>	<p><u>제19조(감독 등) (현행과 같음)</u></p>
<u>제10조(시행규칙) (생략)</u>	<p><u>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b>  <b>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b>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사 용 료</th> </tr> <tr> <th>청소년</th> <th>일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체력 단련실</td> <td>1인/1월</td> <td>10,000</td> <td>30,000</td> </tr> <tr> <td>1인/1시간</td> <td>무료</td> <td>2,000</td> </tr> <tr> <td>다목적홀</td> <td>1팀/2시간</td> <td>무료</td> <td>10,000</td> </tr> <tr> <td>강의실 및 동아리방</td> <td>1팀/2시간</td> <td>무료</td> <td>10,000</td> </tr> <tr> <td>댄스연습실, 녹음실 노래음악 연습실</td> <td>1팀/2시간</td> <td>5,000</td> <td>10,000</td> </tr> <tr> <td rowspan="3">체육관 대관</td> <td>이용료</td> <td>1인/2시간</td> <td>무료</td> <td>2,000</td> </tr> <tr> <td>평일</td> <td>1회/2시간</td> <td>20,000</td> <td>35,000</td> </tr> <tr> <td>토·공휴일</td> <td>1회/2시간</td> <td>20,000</td> <td>40,000</td> </tr> <tr> <td rowspan="2">극장 대관</td> <td>평일</td> <td>1회/2시간</td> <td>20,000</td> <td>35,000</td> </tr> <tr> <td>토·공휴일</td> <td>1회/2시간</td> <td>20,000</td> <td>40,000</td> </tr> </tbody> </table>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는 무료로 한다.</li> <li>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li> <li>청소년단체사용(20인 이상)의 경우는 20% 감경 한다.</li> <li>장애인은 50% 감경한다.</li> <li>기준시간의 50% 이상 시간 초과시 다음회 이용료 선액을 적용한다.</li> <li>체력단련실은 헬스장, 어여로비실등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1팀의 인원은 10명을 기준으로 한다.</li> <li>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li> </ul>								구 분	기준	사 용 료		청소년	일반	체력 단련실	1인/1월	10,000	30,000	1인/1시간	무료	2,000	다목적홀	1팀/2시간	무료	10,000	강의실 및 동아리방	1팀/2시간	무료	10,000	댄스연습실, 녹음실 노래음악 연습실	1팀/2시간	5,000	10,000	체육관 대관	이용료	1인/2시간	무료	2,000	평일	1회/2시간	20,000	35,000	토·공휴일	1회/2시간	20,000	40,000	극장 대관	평일	1회/2시간	20,000	35,000	토·공휴일	1회/2시간	20,000	40,000	<p><b>[별표]</b>  <b>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b>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기 준</th> <th colspan="2">사 용 료</th> </tr> <tr> <th>아동·청소년</th> <th>일 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체력단련실</td> <td rowspan="2">자유이용</td> <td>1인/1월</td> <td>10,000</td> </tr> <tr> <td>1인/1시간</td> <td>무료</td> </tr> <tr> <td>다목적실</td> <td>자유이용</td> <td>2시간</td> <td>무료</td> </tr> <tr> <td>강의실</td> <td>자유이용</td> <td>2시간</td> <td>무료</td> </tr> <tr> <td>댄스연습실</td> <td>자유이용</td> <td>2시간</td> <td>무료</td> </tr> <tr> <td>음악연습실</td> <td>자유이용</td> <td>2시간</td> <td>무료</td> </tr> <tr> <td rowspan="3">체육관 대관</td> <td rowspan="3">체육관 자유이용</td> <td>1인/2시간</td> <td>무료</td> </tr> <tr> <td>평일</td> <td>20,000</td> <td>35,000</td> </tr> <tr> <td>토·공휴일</td> <td>2시간</td> <td>20,000</td> <td>40,000</td> </tr> <tr> <td rowspan="5">체육관 부대시설</td> <td>그랜드피아노</td> <td>1회</td> <td>10,000</td> <td>20,000</td> </tr> <tr> <td>무선마이크</td> <td>2개</td> <td></td> <td>6,000</td> </tr> <tr> <td>유선마이크</td> <td>2개</td> <td></td> <td>무료</td> </tr> <tr> <td>빔프로젝트</td> <td>1대</td> <td></td> <td>무료</td> </tr> <tr> <td>냉난방</td> <td>시간당</td> <td></td> <td>20,000</td> </tr> <tr> <td>안산대녀 청소년과학관</td> <td>천체영상관람</td> <td>1인/1회</td> <td>1,000</td> <td>2,000</td> </tr> </tbody> </table>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난방총기초: 사용량(m<sup>2</sup>)×단가(원)</li> <li>추가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li> <li>소극장·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 평일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토·공휴일(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li> <li>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li> <li>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li> </ul> </li> </ul> </li> <li>* 시설 대관의 경우 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를 적용함.</li> </ul> </li> </ul>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아동·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자유이용	1인/1월	10,000	1인/1시간	무료	다목적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강의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댄스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음악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체육관 대관	체육관 자유이용	1인/2시간	무료	평일	20,000	35,000	토·공휴일	2시간	20,000	40,000	체육관 부대시설	그랜드피아노	1회	10,000	20,000	무선마이크	2개		6,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빔프로젝트	1대		무료	냉난방	시간당		20,000	안산대녀 청소년과학관	천체영상관람	1인/1회	1,000	2,000
구 분	기준	사 용 료																																																																																																																													
		청소년	일반																																																																																																																												
체력 단련실	1인/1월	10,000	30,000																																																																																																																												
	1인/1시간	무료	2,000																																																																																																																												
다목적홀	1팀/2시간	무료	10,000																																																																																																																												
강의실 및 동아리방	1팀/2시간	무료	10,000																																																																																																																												
댄스연습실, 녹음실 노래음악 연습실	1팀/2시간	5,000	10,000																																																																																																																												
체육관 대관	이용료	1인/2시간	무료	2,000																																																																																																																											
	평일	1회/2시간	20,000	35,000																																																																																																																											
	토·공휴일	1회/2시간	20,000	40,000																																																																																																																											
극장 대관	평일	1회/2시간	20,000	35,000																																																																																																																											
	토·공휴일	1회/2시간	20,000	40,000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아동·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자유이용	1인/1월	10,000																																																																																																																												
		1인/1시간	무료																																																																																																																												
다목적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강의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댄스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음악연습실	자유이용	2시간	무료																																																																																																																												
체육관 대관	체육관 자유이용	1인/2시간	무료																																																																																																																												
		평일	20,000	35,000																																																																																																																											
		토·공휴일	2시간	20,000	40,000																																																																																																																										
체육관 부대시설	그랜드피아노	1회	10,000	20,000																																																																																																																											
	무선마이크	2개		6,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빔프로젝트	1대		무료																																																																																																																											
	냉난방	시간당		20,000																																																																																																																											
안산대녀 청소년과학관	천체영상관람	1인/1회	1,000	2,000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33
----------	------

제안년월일 : 2010. 11.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동조례 제13조에 법인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면서 다자녀 가정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동조례 제17조를 신설하고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 주요골자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3조)
- 공무원 파견 근거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3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13조(사용료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          1. ~ 4. (원안과 같음)  <u>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  <u>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u></p>
<p>제17조(파견)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p>	<p><u>&lt;삭제&gt;</u></p>
<p>제18조 ~ 제20조 (생략)</p>	<p>제17조 ~ 제19조 (원안 제18조 ~ 제20조와 같음)</p>